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KB셀러론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팀 원	팀 장	부점장

KB셀러론 이용약관정서(마켓·PG용)

주식회사 국민은행 앞

20 년 월 일

본 인 (인)
주 소

본인확인 (20 . . .)
직위 :
성명 :

본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합니다)과 셀러에 대한 정산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KB셀러론」을 이용함에 있어 「KB셀러론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선택란의 “□” 내에 “V” 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 등을 자필로 기재하십시오)

약정기간	년 월 일부부터					년 월 일까지				
셀러에 대한 대출한도	금 원정 (₩)									
셀러 대출이자율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input type="checkbox"/> MOR <input type="checkbox"/> 단기COFIX] + ()% [작성일 현재 기준금리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input type="checkbox"/> MOR <input type="checkbox"/> 단기COFIX] + ()% [작성일 현재 기준금리()%, 금리재산정주기()개월]				
	<input type="checkbox"/> CD91 일물 유통수익률 + 가산금리					여신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91일 이내	182일 이내



	<input type="checkbox"/> 단기COFIX + 가산금리	가산금리	()%	()%	()%	()%	()%
	※상기 여신이자율은 제7조 제5항에 따른 할인금리가 반영된 금리이며, 금리할인가간이 종료된 후에는 할인금리만큼 대출금리가 상승합니다.						
	본인은 금리 적용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자연배상금	① 채무이행지체 등에 따른 자연배상금률은 약정이자율에 연 3.0%P 를 더하여 최고 연 15.0% 이내로 적용합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자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율에 연 2.0%P 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3 조(이자 등과 자연배상금)에 따르기로 합니다.						
상환청구권	본 약정은 셀러에 대한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으로 합니다.						
정산채권 양도계약에 대한 승낙 동의	전자적 장치에 의한 채권양도 자동승낙방식에 동의함						

제2조 약정의 유효기간

- ①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약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약정기간 내에 셀러에 대하여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 건별대출 만기일이 본인의 약정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정산금 등 산정 및 통보

- ① 본인은 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 서비스 등을 통하여 셀러가 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본인이 수령한 또는 수령할 예정인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산정합니다
- ② 본인은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정산금, 정산(예정)일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은행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의 조작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보존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정산금의 처리

- ① 본인은 제3조에 따라 은행에게 전자적 장치로 통보한 정산금에 대하여는 정산(예정)일에 채권양도 통지 시 지정한 **계좌(가상계좌 등 포함)**로 정산채권 상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제5조 제1항에 의한 변경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정산채권 상당 금원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 ② 1항에서 정한 **계좌(가상계좌 등 포함)는 은행과 정한 계좌로 하되**, 본 약정에 의한 결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 정산금의 변경

- ① 본인이 제3조에 따라 은행에게 정산금 등을 통보한 후에 전산조작 오류 등 정산금 및 정산(예정)일 등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기 통보한 정산금 등의 변경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 장치로 은행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은 정산금의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 ③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기 통보한 정산금 등의 변경에 대하여 통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은행 측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고, 본인의 전산시스템상의 문제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6조 셀러에 대한 대출

- ① 본인이 은행에게 통보한 정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예정)일 이전에 셀러가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KB셀러론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제1조의 셀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로 하며, 본 약정서, 추가약정서(KB셀러론용),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셀러 대출한도는 은행이 셀러별로 분배하여 약정하기로 하며, 셀러별로 약정된 대출한도관리 또한 은행의 책임하에 운용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2항에 의한 셀러별 대출한도 약정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④ 은행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셀러에 대하여 대출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셀러가 은행여신거래약관(기업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셀러 대출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정한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한 경우
 3. 인터넷 또는 은행의 전산상 장애로 셀러가 대출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정산(예정)일에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5.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지연한 경우
 6. 셀러의 채권자가 본인의 셀러에 대한 정산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제7조 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 ① 『기준금리』란 금리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로서 변동금리여신에 있어서는 금리변경의 기준이 되는 금리이며, 『MOR(Market Opportunity Rate)』, 『단기 COFIX(Cost of Funds Index)』가 있습니다.
 1. 『MOR(Market Opportunity Rate)』이란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금리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 가.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 : 7일 이하 CALL(1일물), 3개월 이하 CD(91일물), 6개월 이상 금융채(잔존만기별) AAA등급
 - 나. 산출방법 : 제 가 목의 금리만기별 기준상품 유통수익률은 공신력 있는 기관(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등)이 고시하는 전주 최종영업일 전영업일 종가를 적용하며,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관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 보관법 : 기준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이 없는 만기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하만기수익률에 가중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2. 『단기COFIX(Cost of Funds Index)』란 국내 정보제공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금리만기 3개월에 대하여 전주



마지막 영업일에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단기COFIX를 적용합니다.

3. 기준금리는 여신실행일 기준으로 결정하며, 여신약정일과 여신실행일이 다른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주기별 변동금리여신』이란 고객과의 사전 약속에 의해 일정기간 단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금리를 재 산정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금리재산정주기마다 기준금리(MOR, 단기 COFIX)를 변경하는 금리의 여신입니다.

1. 여신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로 하고, 기준금리 및 금리재산정 주기는 고객이 선택하여 적용하기로 하되,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은행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 기준금리는 제1조에서 정한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날부터 변경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일 전에 기한연장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처리일 현재의 기준금리를 당초 만기일부터 적용합니다.

3. 여신기간 중에는 금리재산정주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고정금리여신』이란 여신을 실행할 때 결정한 금리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는 여신입니다.

④ 할인금리 항목별 적용기준

항목	적용기준
은행거래현황, 거래기여도 등에 의한 할인금리	은행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거래실적 증대가 예상되는 우량고객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권 범위 또는 본부의 금리할인 승인조건에 따라 할인금리 및 할인기간 적용
KB 스타클럽고객 할인금리	SOHO 여신 중 KB 스타클럽고객(골드스타 이상) 할인금리 적용
대출상품별 할인금리	해당 대출상품별 은행거래실적 등에 따른 할인금리 적용

⑤ 금리할인 적용 항목 (※ 해당 항목에 대하여 할인금리항목란 “□” 내에 “V” 및 할인금리를 은행직원이 기재하고 본인이 확인하기로 합니다.)

할인 금리 항목	<input type="checkbox"/> 은행거래현황, 거래기여도 등에 의한 할인금리	1. 할인금리 ()%					()
		□ 상품명: ()					
		여신기간	30일 이내	60일 이내	91일 이내	182일 이내	182일 초과
		할인금리	()%	()%	()%	()%	()%
		2. 금리할인기간 ()개월,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KB 스타클럽고객 할인금리	할인금리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상품 할인금리	상품 할인금리 합계					()%	
<input type="checkbox"/> 수신(적립식, 거지식) 실적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input type="checkbox"/> KB카드(기업카드포함) 신규발급 또는 사용실적 ()%							
<input type="checkbox"/> KB가맹점우대통장 보유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우대종합통장 보유 ()%							
<input type="checkbo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평잔 ()%							
<input type="checkbox"/>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지정 고객 ()%							
<input type="checkbox"/> KB sERP 또는 C-Cube 가입(또는 사용) 고객 ()%							
<input type="checkbox"/> KB스타뱅킹 가입(또는 사용) 고객 ()%							
<input type="checkbox"/>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별 할인금리 ()%							
<input type="checkbox"/> 외국환 거래실적 ()%							
<input type="checkbox"/> KB 스타클럽고객 할인금리 ()%							
<input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할인금리	할인금리 ()%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input type="checkbox"/> () 할인금리	할인금리 ()%					금리할인기간 ()개월	

금리할인 적용에 있어서 할인금리 및 금리할인기간을 위와 같이 적용하기로 확인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 금리할인기간을 월단위로 운용하는 경우 금리할인종료일은 여신개시일에 금리할인기간을 더한 날로 하기로 합니다.



제8조 정산채권 양도 승낙

- ① 셀러는 대출약정시 담보로 정산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은행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본인에게 인터넷과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은행의 채권양도통지에 대하여 본인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승낙이 있을 경우에 은행은 셀러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③ 본인의 채권양도승낙은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로 하며, 제1조에 의거 은행과 정산채권양도계약 건에 대한 자동승낙방식에 동의한 경우로서 셀러와 은행이 체결한 모든 채권양도계약은 본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권양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셀러에 대한 상환청구권

은행은 본인이 통지한 정산금 범위 내에서 정산채권을 담보로 셀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제1조의 셀러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지연배상금

- ① 셀러에 대한 대출이 취급된 정산채권에 있어 은행이 양수채권자로서 결제대금을 청구할 경우, 미입금으로 인한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에서 정한 셀러가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지연배상금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은행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정산금의 미입금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본인과 셀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며 은행은 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정산채권의 선결제

셀러에 대한 대출이 취급된 정산채권의 선결제시에는 선결제로 인해 발생한 환출이자는 셀러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2조 통지의무 등

본인은 셀러의 채권자가 정산채권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셀러로부터 자신이 은행을 제외한 제 3 자에게 정산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정산채권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셀러의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은행에 고지하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및 처분

은행은 정산금 지급(예정)일에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증권 및 채권 등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예정)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본인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다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이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셀러에 대한 대출이 취급된 정산채권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약정의 해지 및 대출조건 변경

- ① 이 약정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다음 중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내에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14일의 유예기간 없이도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정산(예정)일에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지 못한 미결제상태이거나, 미결제 횟수가 1년간 4회를 초과하는 경우
 - 2. 본인에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발생 등 은행의 내규에 의한 여신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본인의 해지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의 기업신용등급 변동 등으로 채권보전 및 은행에 손실을 끼칠 염려가 예상되는 경우 은행은 제1조의 셀러에 대한 약정한도 및 대출금리 등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 본인은 셀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본인은 “KB 셀러론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	본 인	(인)
--	-----	-----

본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